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03
----------	-----

2023년 2월 2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2월 6일, 이은림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은림 의원)

- 가. 제안이유
-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유사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을 기본이념에 추가함(안 제2조).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를 정의함(안 제3조).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기준 마련을 규정함(안 제18조).

-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나.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태양광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에너지전환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제315회 정례회(22.12.) 시 「태양광 조례」 폐지조례안과 「에너지전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한 유사 조례의 일원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조례안으로 상정된 각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심사보류)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조례」 내용 중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등에 관한 규정과 「에너지전환 조례」 내용 중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발의된 것임.

- 안 제2조는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에 있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본이념에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을 추가하고, 안 제3조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과 포상 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안 제18조는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거나 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필수적인 과제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임.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동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18조(설치기준의 마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설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해당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안 제29조는 기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또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에 베란다·주택형·건물형 태양광 설비와 같이 특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

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확대를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발굴 및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조성 및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9.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제3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10.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설치기준의 마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설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는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허가 대상시설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해당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

제24조(중전의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시, 자치구 및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제2항 중 “효율화”를 “효율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로, “자를”을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8조)제1항 중 “효율화와”를 “효율화,”로, “확대를”을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로, “행정 및 재정상”을 “행정·재정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효율화와”를 “효율화,”로,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기”를 “개발·이용·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확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발굴 및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u>참여·소통·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및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u></p> <p><신설></p> <p><신설></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p>	<p>제2조(기본이념)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조성</u></p> <p>8. <u>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u></p> <p>9. <u>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u></p> <p>제3조(정의) ①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u></p> <p>11. <u>“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u></p> <p>②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p>

<신 설>

제18조 ~ 제21조 (생 략)

제18조(설치기준의 마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설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해당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

<신 설>

제22조 (생 략)

제23조(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4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생 략)

②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 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를 포상 할 수 있다.

제25조 ~ 제27조 (생 략)

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 장은 에너지 이용 효 율화와 신·재생에 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 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을

<삭 제>

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4조(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시, 자치구 및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현 행과 같음)

② ----- 효 율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

제26조 ~ 제28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와 같음)

제29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
----- 효 율화, -----
-----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
--- 행정·재정상-----.

② ----- 효 율화, -----
----- 개발·이용·보급 및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2. 주택형 태양광 설비
3. 건물형 태양광 설비
4. 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신 설>

<신 설>

④ ~ ⑥ (생략)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확대를 -----

-----.

③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발굴 및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